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7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정회용의원안)	3

I. 개요

1.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30.
- (3) 회 부 일 : 2025. 10.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정희용의원안)

현행	개정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제61조제1항) ○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u>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개인 사업자</u>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u>1억 5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개인 사업자</u> ☐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희용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375)

☐ 개정안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 공급대가의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고,¹⁾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됨.²⁾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														
과세기간	6개월 단위 제1기(1~6월), 제2기(7~12월)	1년 단위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														
세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 <table><tr><th>업 종</th><th>부가가치율</th></tr><tr><td>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td><td>10%</td></tr><tr><td>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td><td>20%</td></tr><tr><td>숙박업</td><td>25%</td></tr><tr><td>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td><td>30%</td></tr><tr><td>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td><td>40%</td></tr><tr><td>그 밖의 서비스업</td><td>30%</td></tr></table>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														
납부면제	적용대상이 아님	과세기간(1년)별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 상승 등으

2)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times 10\text{퍼센트}$
--

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현재보다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둘째,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정착 등으로 세금 탈루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해도 거래의 투명성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2020년 세법개정으로 1억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있음.

연도별 간이과세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 703만 3,202명 중 간이과세자는 206만 8,827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며,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간이과세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인일반사업자(A)	4,464,458	4,564,132	4,792,666	4,919,627	4,964,375
간이과세자(B)	1,684,147	1,877,513	2,000,004	1,994,051	2,068,827
개인사업자(C=A+B)	6,148,605	6,441,645	6,792,670	6,913,678	7,033,202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간이과세자 비중(B/C)	27.4	29.1	29.4	28.8	29.4

자료: 국세청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간이과세제도가 확대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단절되어
근거과세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³⁾.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공급가액의 합계액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前)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간
이과세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
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1)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합계액 × 10%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공제법)

(2)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합계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 본래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자료로서 세금계산
서의 적정한 수수와 그 합계표의 제출, 그리고 그 사후적 검정을
위한 기장을 필요로 하는데, 세무능력이 부족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화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매입세액공제

3) 서동국·허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를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다해지는 경향이 있어 간이과세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대신 위와 같이 공급대가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설정된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의 매입자료는 납부세액의 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는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적고,⁴⁾ 개정안과 같이 간이과세제도가 확대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단절되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의 흐름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음.⁵⁾

둘째,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 703만명 중 206만명(29.4%)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다는 점⁶⁾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반이 축소될 우려가

4)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을 장려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Ⅱ」, 상경사, 2022

6)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하게 되므로 평균 2%로 낮아짐.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액을 2배 이상 확대 해왔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문제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도 취지,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